

1. 개정이유

철도시설의 건설,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시설 및 차량의 설계·제작, 시공·감리,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철도안전 전문기관을 지정·운영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, 신청사항의 변경, 업무수행경력, 사고이력,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대한 사항과 미흡한 서식을 추가로 정하는 등 철도교통 안전확보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격관련 신청사항 변경 시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마련(안 제92조제1항)
- 나. 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, 철도안전 전문인력 보유증명서,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대장을 신설하고 별지서식을 정함(안 제92조제5항, 안 제46호의2, 제46호의3, 제46호의4 서식)
- 다.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(안 제92조제6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5개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”을 “제출하여야 하며, 자격관련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6호의2서식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

⑤ 안전전문기관은 영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으로 발급하고, 그 발급사실을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확인 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.

⑥ 영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지 제46호의2서식, 별지 제46호의3서식, 별지 제4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2조(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)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(증명서 재발급)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(이하 “안전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에 <u>제출</u> 하여야 한다.	제92조(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제출하여야 하며, 자격관련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6호의2서식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</u> 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<u>안전전문기관은 영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으로 발급하고, 그 발급사실을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확인 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.</u>

<신 설>

⑥ 영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
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발급
및 경력확인을 위한 세부적인
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
여 고시한다.

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사항 변경신청서

※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실명확인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	------	------	----

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자격분야
	전자우편주소	전화번호	자격 및 등급
	주소		

소속회사	회사명(대표자)	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

변경사항	자격사항	경력사항	근무처사항

행정처분	처분구분	처분년월일	처분기관	근거 및 사유
	업무정지			
	제재조치			

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제9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본인)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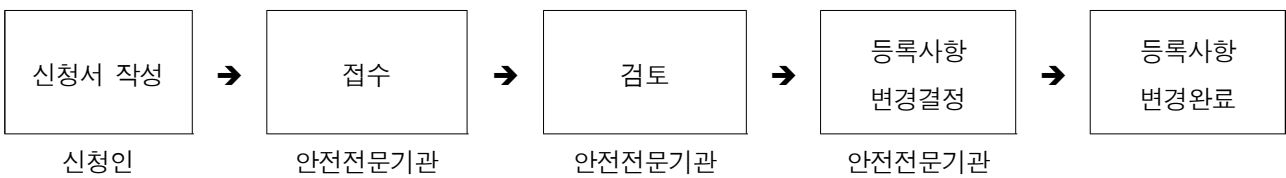
대리인(성명)

(서명 또는 인)

안전전문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
	1. 재직 또는 퇴직증명서와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가입증명서
	2. 자격사항 및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)
	3. 행정처분 증빙서류(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종질지(80g/㎡)]

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

분야(부분)		소 속 :			
발급번호				관리번호	
성 명		생년월일			
주 소	(우편번호)				
자격등급	종목 및 등급	등록번호		등록일자	
국 가 기술자격	종목 및 등급	등록번호		등록일자	
학 력	학교명	학과명		학 위	졸업년월일
교육훈련	교육기간	종류		수료번호	교육기관
상훈 · 제재	년월일	종류	상훈제재기관	제재기관	근거
근무처	회사명	등록년월일		회사명	등록년월일
		~			~
		~			~
		~			~
		~			~
		~			~
		~			~
		~			~
		~			~
		~			~

성명 :

(쪽 중 제2쪽)

참여기간 (년월일)	근무처명	발주자	구 분	환산경력
	직 명	참여사업명	담당업무	
~				
~				
~				
~				
~				
~				
~				
~				
~				

※ 공사(용역)개요 및 공사(용역)금액은 발주청(인·허가기관)의 확인으로 신청된 사항만을 표기하며, 미신청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.

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제92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경력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안전전문기관의 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

